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81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단7656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① 2021. 4. 9.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1,916,530원, 지방교육세 164,270원, 농어촌특별세 109,510원, 가산세 433,660원의 부과처분을, ② 2021. 4. 9. 원고 B, C에게 한 취득세 1,280,120원, 지방교육세 109,720원, 농어촌특별세 73,150원, 가산세 286,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③ 2021. 4. 28. 원고 F, D, G, E에게 한 취득세 4,469,460원, 지방교육세 383,090원, 농어촌특별세 255,390원, 가산세 1,011,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